

電氣設備技術基準改正

—自家用施設關係條項을 중심으로—

◇ 本稿는 日本國 通商產業省이 1976年 10月 16日 表題의 件으로 改正한 것을 日本電氣協會가 主催한 세미나에서 資源에너지廳 公益事業部 課長補佐 小木曾勝也氏가 行한 講演을 日本電協機關紙「生產과 電氣」77. 1月號에 掲載한 것을 때마침 우리나라에서 當協會가 主宰하는 電氣內線工事規程을 制定하고 있음에 즈음하여 他山之石이 되겠으므로 여기 講演要旨를 轉載하여 參考資料로 한다. 改正한 部分은 全文翻譯 하였으므로 重複을 피해서 講演의 重要部分만을 要約採取하였음을 밝혀둔다.

講演要旨

電氣設備 技術基準은 1972年 1月 改正된 以來로 是은 變化를 일으켰으므로 오늘날에 와서는 그 實情이 맞지 않게 되어 電氣設備 水準의 向上에 따라 自然過去에 制定한 规定을 現實에 맞도록 고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社會的 要請에 依하여 改正하게 된 것이 電線을 비롯한 屋內配線工事, 電力保安 通信設備에 이르기까지 廣範囲한 大幅改正이므로 다음에 그 改正部分의 具體的 事項을 들여서 主要點을 說明하기로 한다.

改正의 主要點

裸電線, 絶緣電線, 케이블等 電線一般에 關한 共通의規格을 定했다. 從前의 電氣設備基準에는 絶緣電線이나 多芯型電線, 코일드, 케타이어, 케이블等의 每品種마다 規格이 定해 있었던 것이나 이번에는 모든 電線의 共通한 事項을 新規로 策定하였다.

여기 그 改正要點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電線

(1) 裸電線, 絶緣電線, 「케이블」等의 電線一般에 關한 共通의規格이 從前에는 없었던 것을 이번 改正에서 告示로서 一括으로 規定했다.

이 告示에는 主로 導體, 絶緣體, 外裝 등이 아닌 附屬物(線心의 色別, 導體補強線, 세파레이터, 補強索, 遠隔, 介在物, 防潮材, 防腐材, 塗料, 接地線)에 대하여 規定했다(日本國 通商產業省令 第6條 同告示 第1條以下 省令 또는 告示로서 表示함).

(2) 低壓「케이블」의 規格은 종래에는 鍍漆이나 「알미늄」線반으로 했던 것을 거기에도 主로 「별」과 같은 低壓軟線으로서 使用하는 導體가 銅心「알미늄」교아건線(ACSR)이기 때문에 이것을 追加해서 使用하도록 했다(告示 第5條).

(3) 裸電線에 使用해 온 「라이팅닥트」에 依해서 새로 規定한 바 있으므로 裸電線의 定義(範疇)에서 「라이팅닥트」란 導體를 除去했다(省令 第11條).

(4) 金屬線의 規格中 耐熱合金線의 規格이 종전에는 直徑 5mm 以下이었던 것을 이번에 直徑 6.6mm 以下로 했다(告示 第7條).

(5) 配電線路의 裝柱方法이 多樣化함에 따라 高壓引下線에 整形한 硬銅線을 使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高壓引下線의 規格을 종래는 軟銅線에 局限하였던 것을 이번에 硬銅線도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車線의 굽기는 종전 2~3.2mm이던 것을 2~5mm로 고쳤다(告示 第12條).

(6) 「콘크리이트」直埋用「케이블」의 規格을 定立했다. (省令 第9條, 第201條, 告示 第32條의 3)

(7) 半導電性 外裝 錠架用 高壓케이블의 規格을 定立했다(省令 第10條, 第11條, 告示 第22條의 2),

(8) 水底「케이블」의 規格인 内部裝은 종전에 腐蝕防

止를 위한防腐處理를 施行하고 最外裝에는 防腐性「콘파운드」를 塗布하는데 限定하였으나 「플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또는 「비닐」等을 纖維狀으로 한것이 良好하므로 「죽-트」와 같은 것으로 하여 使用해도 좋다고 보아 紙絕緣을 高壓「케이블」의 規格으로 했던 것을廢止했다(告示 第26條).

(9) 小勢力回路 電線導體의 規格을 設定했다(告示 第42條).

(10) 高壓「케이블」의 外裝두께를 종전에는 「트리 푸리스」型과 單芯「케이블」을 同一하게 取扱하였으나 兩者的 規格이 分離하여 單芯「케이블」型과 「트리 푸리스」型 「케이블」을 別個로 規定했다.

2. 電路의 絶緣과 接地工事關係

現在 使用設備 條項省令(通商產業省令……以下같음) 第243條의 2에 規定한 「파이프라인」等의 加熱裝置를 今回에 新規로 規定했다. 이 또한 「파이프라인」等이 비고적 데이 사용되고 있어 加熱에 電熱을 쓰는 케이스가 늘어나서 그하한 特殊設計施設認可가 데이 되고 있으므로 特殊設計施設에 關한 標準的인 工法이 必要하므로 이번 設備基準中에 採擇한 것이다. 이런 基準工法中에는 「색트」法이라고 通稱되고 있는 加熱方式이 있는데 그 「색트」方式에 있어서는 發熱管을 接地해서 使用하는 것이 保安上 問題가 없다고 해서 省令 第243條의 2에서 認定한 것이다.

이 第243條의 2條項은 總則에도 開聯되는데 그 第13條 規定의 絶緣의 原則에 있어서도 第243條의 13에 依한 接地에 關해서는 電路의 絶緣의 原則에서 벗어난다고 보아 第13條의 改正과도 連關되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省令 第13條, 第27條의 改正에 있어 變壓器中 「스타-스타-1」結線한 것은 3次捲線을 高周波抑制對策으로써 設定하는 例가 있으나 이捲線이 外部回路에 全然 接續하지 아니하는 安定捲線이나 遠休捲線같은 경우에는 그의 1端을 接地해도 無妨하다고 認定했다. 따라서 第27條 2項에서 그의 接地를 認定함으로써 그開聯으로 第13條 規定에 依한 電路絕緣의 原則에서 除外했다.

세째로 超高壓系에 關한 것인데 이것은 自家用과는 無關하다고 할 수 있으나 超高壓系의 直接接地의 電路 變壓器같은 母線과 그밖의 경우 從來 耐壓絕緣耐力試驗 電壓은 最大使用電壓의 0.72倍였던 것을 中性點이 直接接地하는 發電所, 變電所等의 構內에 新設된 電路에 對하여 再三檢討한 結果 1線地絡時의 健全相의 電位上昇

이, 中性點이 地絡點近傍에 直接接地하는 것으로 確測한 程度로 明顯한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判明되었다. 따라서 試驗電壓은 中性點이 直接接地된 發電所, 變電所等의 構內電路에 限하여 最大使用電壓의 0.64倍도 無妨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超高壓系의 直接接地系의 電路를 0.72倍와 0.64倍의 2元化해도 좋다고 했다.

네째로 省令 第16條 變壓器의 경우 電氣鐵道用 變電所에 使用되는 스코트結線 變壓點의 絶緣耐力試驗法을 定한 것인데 國鐵의 新幹線은 275,000V의 超高壓스코트結線 變壓器를 使用하고 있다. 이것은 絶緣設計에서相當한 코스트面에 影響을 주고 있으므로 이것을 1線地絡時의 問題를 감안하여 無理안가는 水準까지 引下하려고 했다.

끝으로 電力線搬送用 組合「콘텐사」, 避雷器는 絶緣耐力試驗이 困難하므로 告示로서 性能을 規定해서, 絶緣耐力試驗의 對象에서 除外했다.

避雷器는 實際 絶緣耐力試驗을 할 때에는 構行上 빠져있으므로 이 점도 設計基準에서 明確히 한 것이다.

以上이 電路의 絶緣과 接地工事關係에 關한 改正의概要인데 省令 第13條의 電路의 絶緣 但書에서 除去追加, 絶緣耐力試驗值의 再考, 避雷器, 電力線搬送用 組合콘텐사等에 關한 絶緣耐力試驗의 對象에서 除外한 것이 主要點이 된다.

다음 그 改正要點을 具體的으로 보기로 한다.

〈電路의 絶緣과 接地工事關係〉 改正內容

(1) 「파이프라인」等 電熱裝置의 가운데 表皮電流加熱方式에 依한 것은 發熱管을 接地해서 使用하는 것이 安全하기 때문에 接地하도록 했다(省令 第13條, 第243條의 2)

(2) 變壓器中에 Y-Y結線한 것은 高周波抑制對策으로써 3次捲線을 附屬으로 하는 것이 있다. 이捲線을 外部回路에 全然 接續치 않는 경우(安定捲線 遠休捲線等)에는 다른捲線에서 移行하는 异常電壓에 依하여 絶緣이 破壞되는 수가 있다. 그러므로 그對策으로써 3次捲線의 1端을 接地해서 使用하도록 改正했다(省令 第13條, 第27條).

(3) 17萬「볼트」를 超過하는 直接接地系電路와 電路에 接續하는 變壓器 器具等의 絶緣耐力試驗電壓은 從來一律의 으로 最大使用電壓의 0.72倍로 하고 있었다. 500KV系統의 擴大에 따라 将來할 系統을 考慮해서 試驗電壓의 再檢討 結果 「그의 中性點이 直接接地해 있는 發電所, 變電所등의 構內의 것」과 「其他의 것」과를 區分해서 試驗電壓을 規定하여 前者를 最大使用電壓의

0.64倍, 後者는 0.72倍로 規定했다(省令 第14條, 第16條, 第17條).

(4) 電氣鐵道用變電所에 主로 使用하는 「스콧트」結線變壓器의 絶緣耐力試驗方法을 이번 改正에서 規定했다(省令 第16條).

(5) 電力線路用 結合콘덴서, 避雷器는 絶緣耐力試驗이 困難하므로 告示로서 性能을 規定해서 絶緣耐力試驗對象에서 除外했다(省令 第17條, 告示 第9條, 第10條의 2).

3. 機械와 器具關係

(1) 公害汚染防止를 위한 것인바 電氣機械外 器具에 PCB 絶緣油을 使用하는 것을 防止하는 新規 規定을 省令 第29條의 2로 新規 規定하였다. 다시 말하여 PCB 를 含有한 絶緣油을 새로 使用하는 것을 禁止할 것은勿論이요 이미 使用되고 있는 電氣機械外 器具를 移設하는 것도 嚴格히 規制했다.

(2) 高壓用과 特別高壓用의 機械器具에 感電을 防止하는 規定으로써 省令 第30條과 第31條를 改正한 것이다. 1972年 電氣設備 技術基準에는 取扱者만이 出入하도록 設備한 場所에서는 特히 充電部分을 特別指示한 規定은 없었으나 取扱者の 不注意로 露出한 充電部分에 接近하여 實際로 感電死傷한 事例가 發生하였으니 이려한 事實을 默認할 수 없는 問題點이 있어 이번에 上記省令을 改正하여 取扱者에게도 格別한 注意를喚起하도록 規定한 것이다.

(3) 地絡遮斷裝置에 關한 規定을 省令 第41條에서 改正했다. 그것은 이번 改正에서 2가지 問題點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從來의 設備基準에는 取扱者以外에 出入을 禁止하고 있는 場所인 까닭에 地絡遮斷裝置가 必要치 않다는 見解다. 그러나 取扱者の 電氣에 관한 知識도 問題가 있어 發電所, 變電所, 開閉所, 또는 이에 準하는 場所에서는 取扱者の 電氣知識이 相當히 期待되는 경우에만 省略이 可能한 것이다. 몇つか 같은 곳에 電氣知識이 없는 一般農家도 取扱할 수 있는 곳에서는 地絡遮斷裝置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第2의 問題點은 電氣用品國束法의 適用을 받는 漏電遮斷器를 內藏으로 하는 것은 地絡遮斷裝置를 省略하기로 했다.

이에 關한 具體的 規定은 다음과 같다.

<機械와 器具關係規定의 改定內容>

«(1) 「폴리鹽化비닐」(PCB)에 依한 汚染防止한 觀點

에서 「폴리鹽化비닐」을 含有한 絶緣油를 使用하는 電氣機械器具의 移設과 아울러 新設을 禁止하기로 했다(省令 第29條의 2)

(2) 取扱者が 不注意로 露出시킨 充電部分에 接近하여 感電死傷하는 事故發生이 있기 때문에 機械器具의 露出한 充電部分에 썹사리 接觸할 愛慮가 없도록 警防하는 施設을 規定했다(省令 第30條 第31條).

(3) 電氣知識이 빈곤한 一般人이 電氣機器에 依한 感電事故防止를 圖謀하기 위하여 地絡遮斷裝置 省略의範圍를 嚴格히 具體화하는 規定으로 改正했다. 例를 들면 종전에는 「取扱者 以外는 出入하지 못하게 하도록 設備한 場所」라는 것을 「發電所 또는 變電所, 開閉所 또는 그에 準하는 場所」라고 고쳤고, 地絡遮斷裝置의 設備省略範圍를 限定함과 동시에 電氣用品國束法의 適用을 받는 漏電遮斷器를 內藏하는 경우에만 地絡遮斷裝置를 省略할 수 있도록 規定했다(省令 第41條).

4. 發. 變電所 關係

(1) 省令 第44條에 發電所, 變電所, 開閉所 等 電氣設備技術基準에 對한 改正要旨인데 먼저 省令 第44條 第56條, 第57條에 關聯되는 事項으로서 省令 第44條에는 一般人의 出入을 禁止하고 鐵柵이나 담장을 設施하도록 하고 있으나 發電所의 屋外設備機器에 感電事故를 防止하기 위해서 그 出入口에 出入禁止 標識를 義務化시킨 것이 改正의 主要點이다. 이 點은 屋内에 設施한 機械器具의 案에 出入을 禁止하는 標識를 해야 하도록 義務화하고 있는데 특히 自家用 등 屋内에 設施한 變電所, 發電所에 適用하도록 規定했다.

다음으로 省令 第44條의 2를 新設한 것은 絶緣油의 橫外流出을 防止하도록 中性點 直接接地系에 接續하는 變壓器에 關하여 絶緣油의 量이 過多해서 「아—3에 너지」도 많아 接地事故時에는 變壓器本體가 破壊될 鏡慮가 있다하여 絶緣油流出防止裝置를 設施하도록 規定하였다.

여기 改正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發·變電所 關係>

(1) 一般人의 感電事故 防止를 도모하기 위하여 從來에는 屋外에 設施한 發電所 등에 鐵柵, 담장(壇壁) 등의 設施, 出入禁止를 標識하는 한편 鐵柵, 담장 등과 充電部分까지의 離隔距離를 規定하였으나 屋内에 設施하는 發電所 등에도 屋外와 같이 設施하도록 規定하였다.

는 同時に 모든 發變電所에 施設裝置를 하도록 規定했다(省令 第44條, 第56條, 第57條).

(2) 中性點 直接 接地系에 接続하는 變壓器는 絶緣油 가 많이들고 「아—크에 너지」도 많이 들어 接地事故時에는 變電器自體의 破壊憂慮가 있으므로 이 경우 기름이 流出 防止裝置를 施設하도록 規定했다(省令 第44條의 2

5. 電線路 通則

架空電線路의 支柱에 어린아이들이 올라가 感電事故를 내는例가 있으므로 電線路支柱에 오르내리는 발판金具를 1.8m로 높이 놓여 그린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 이 改正의 着眼點인데 이에 關한 改定內容은 다음과 같다.

<電線路 通則>

(1) 無斷登柱로 因한 感電事故 防止策을 위하여 架空電線路의 支持物에는 디디림 金具등을 地表上 1.8m未滿되는 자리에 施設하지 못하도록 했다(省令 第61條의 2).

(2) A種柱로서 從來는 全長 16m 以下, 設計荷重 700kg 以下의 것만을 認定했으나 全長을 14m 以上, 17m 以下, 設計荷重 700kg 以上 1,000kg 以下의 鐵筋콘크리트柱가 높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施工法을 標準화했다(省令 第64條).

(3) 鐵塔의 構成材로 使用하는 鋼管콘크리트 외에 「풀탈」로서 光填한 것을 使用해도 좋도록 했다(省令 第65條, 告示 第16條, 第18條).

(4) 道路橫斷의 경우 支柱線의 地上高를 追加規定했다(省令 第69條).

6. 低高壓 架空電線路 關係

(1) 이것은 總則에도 잠깐 言及한바 있거니와 半導電性外裝中 架用高壓「케이블」을 이번에 認定해서 施設工法等은 省令 第71條 第3項에서 規定했다.

(2) 省令 第72條의 1項에서 低壓架空電線에는 絶緣電線, 多芯型電線 또는 「케이블」을, 高壓架空電線에는 高壓絕緣電線 또는 「케이블」을 使用하도록 되어 있는데 高壓電線에서는 標電線을 從來대로 認定하였으나 低高壓 架空電線에는 標電線을 認定하지 않았다. 이것은 配電會社에서 架設하는 電線에 業人們이 接觸感電

事故를 내거나 作業者가 「코리안」에 걸려 感電하는 事故를 내는 比率이 높기 때문에 事故豫防을 위해서 取해진 措置だ.

(3) 省令 第98條의 2에 關聯된 것으로 絶緣油를 油入한 配電線 鋼柱에 올려 놓은 것이 噴油하여 行人으로 하여금 不意의 被害를 입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絶緣油를 使用한 開閉器, 斷路器와 避斷器 등을 架空配電線의 柱上에 施設하는 것을 막았다. 同時に 自家用設備에서도 마찬가지로 架空引込線等 架空電線路에 「오일 스위치」等을 施設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기 그 改正內容의 主要點은 다음과 같다.

<低高壓 架空電線路 關係>

(1) 高壓 架空電線路에 限해서 金屬遮閉層을 省略한 半導電性外裝銅架用 高壓「케이블」을 使用할 것을 認定하고 그 施設方法을 規定했다(省令 第71條).

(2) 架空電線에 있어 感電事故 防止를 도모하기 위하여, 低壓 架空電線에는 絶緣電線, 多芯型電線 또는 「케이블」을, 高壓架空電線에는 高壓絕緣電線 또는 「케이블」을 使用하기로 하고 裸線의 使用을 禁止한다. 떠나서 裸線關係의 規定을 刪除했다(第72條~74條, 第82條~85條, 第142條의 1~第142條의 3, 第262條).

(3) 油入開閉器의 噴油事故를 防止하기 위하여 柱上油入機器(開閉器, 斷路器, 避斷器)의 施設禁止를 規定했다(省令 第98條의 2).

7. 低高壓의 屋側

電線路와 引込線 關係

(1) 먼저 省令 第101條에 低壓 屋側 電線路의 施設에 關해서 改正한 것이다. 「메타트라스張(緊線)」 場所에 있어서의 屋側電線路에 있어 屋內配線에서는 省令 第203條의 規定이 있다. 그래서 低壓 屋側 電線路에 對해서도 設備面에서나 保安面에서 다같이 危險性이 있었으나 「메타트라스張(緊線)」에 關한 規定이 없었다. 그래서 低壓屋側電線路를 銅架用線에 銅架施設한 경우의 規定을 追加한 것이다.

(2) 다음으로 「케이블」工事에 依한 屋側 電線路를 銅架用線에 銅架施設하는 경우의 規定도 追加한 것이다.

(3) 省令 第110條의 特別高壓 引込線 等에 施設이 本身에서 發電所 또는 開閉所와 그에 準하는 場所에 直接 引

込하는 경우에도 電線路의 必要規定에 準해서 施設토록 했다.

〈低高壓의 屋側 電線路와 引込線 關係 改正內容〉

(1) 碼子굴에 들이는 工事에 依한 低壓屋側電線路를 「메타르라스張(繫線)」等의 자리에 施設할 경우의 規定을 追加했다(省令 第101條).

(2) 케이블工事에 依한 重線路를 錠架用線에 錠架해서 施設하는 規定을 追加했다(省令 第101條~第103條, 第150條, 第157條, 第158條).

(3) 變電所 또는 開閉所 이에 準하는 場所에 引込線을 施設할 때의 特別高壓引込線의 規定을 追加했다(省令 第110條).

8. 特別高壓 電線路 關係

이것은 主로 特別高壓 架空電線路 關係로써 電力會社 關係에 屬하는 것이다.

(1) 省令 第111條 特別高壓 架空線路에 市街地等에 있어서의 施設制限을 規定한 것으로 地上 높이를 8m에서 10m로 限한 規定이고,

(2) 架空電線路의 線下에서 일어날 수 있는 人體의 靜電誘導防止策을 講究한 것인(省令 第112條).

(3) 特別高壓 架空線과 建造物이 2次 接近狀態에 施設할 때에 施設方法을 規定한 것이다(省令 第133條).

(4) 省令 第134條에 50萬V의 送電線과 道路間의 2次接近은 100m를 超過해서는 從來에는 認定치 않았으나 이번에 그것을 認定했다.

以上의 改正 主要點은 다음과 같다.

〈特別高壓 架空電線路 關係〉

(1) 最近의 急激한 宅地造成化와 道路, 通信網等의 整備擴大로 因한 送電線周邊이 市街化하여, 電線아래附近은 建築物과 其他 工作物이 接近, 交叉하는 경우가 많아 市街地에 施設하는 特別高壓 架空電線의 最低地上高를 從來의 8m에서 10m로 높였다(省令 第111條).

(2) 架空 送電線路의 線下아래에서의 人體에의 靜電誘導防止策으로써, 從來는 「사람에게 危險을 미칠 수 있는 염려가 없도록」施設할 것을 規定했던 것이나 이것은 原則적으로 地表上 1m에서의 電界強度가 30V/cm以下가 되도록 施設規制를 強化했다(省令 第112條).

(3) 170KV 末滿의 特別高壓 送電線은 規定된 方法에 依한 경우, 建築物과 第 2次 接地狀態로 施設할 수 있

으나 從來 建築物의 上部造營材가 不燃性인것만 인정하고 있었으나, 여기 自消性있는 難燃性의 物質(비닐波板 等)도 認定하도록 했다(省令 第133條).

(4) 500KV級 送電線은 運轉實績이 確立, 信賴性, 安全性도 높기 때문에 從來 275KV級 送電線까지 認定했던 道路와의 第 2次接近을 500KV級 送電線까지 擴大해서 認定했다.

9. 地中電線路와 特殊電線路 關係

(1) 省令 第14條에서 送電容量 增加對策으로써 採擇된 直接水冷式 地中電線路를 管 또는 「토라푸」에 收容해서 施設하는 경우의 間隔을 規定하였고,

(2) 高壓以上의 地中電線路를 管 또는 「토라푸」에 넣어서 施設하는 경우에 2m 정도의 간격을 두고 埋設表示를(物件의 名稱, 管理者名, 電壓과 埋設年度)하도록 規定했다. 但書로서 自家用 需要家 等의 施設하는 高壓地中電線路에 있어 15m 以下의 것에 對해서는 이 規制를 받지 않아도 無妨한 것으로 했다.

(3) 波付鋼管 外裝「케이블」은 아무데나 使用할 것이 아니라 水辰케이블에 比해서 強度가相當히 떨어지므로 이점 留意해야 한다는 것을 省令 第155條等에서 注意喚起해 둔 것이다.

이러한 것 등의 主要 改正內容은 다음과 같다.

〈地中電線路와 特殊電線路 關係〉

(1) 送電容量 增加對策으로써 採用했던 直接水冷式 地中電線路의 規定을 追加했다(省令 第143條).

(2) 高壓以上의 地中電線路를 管 또는 「토라푸」에 收容 施設할 경우는, 2m 간격으로 埋設表示(物件의 名稱, 管理者名, 電壓 및 埋設年度)를 表示하도록 規定했다(省令 第143條).

(3) 波付鋼管 外裝「케이블」은 水密性이 優秀하므로 水底電線路에 使用하도록 改正했다(省令 第155條, 告示 第24條).

(4) 工場等 電力使用 增大에 따라 構內電線路에 大容量의 「바스닥트」를 使用할 경우가 많아졌으므로 電線路專用橋, 「바이브스탠드」등에 施設하는 低壓電線路에는 종전 케이블, 캡타이어케이블 만을 許容되었던 것을 이번에 「바스닥트」를 追加했다(省令 第158條).

(5) 電線路에 對한 臨時工事의 規定을 一括 規定했다(省令 第68條, 第71條, 第107條, 第156條, 第161條의 2).

(6) 絶縁電線은 防護具에 收容했을 때 6月 以内에
跟해서 建造物과의 離隔距離를 「케이블」과 同等으로
取扱하기로 했다(省令 第161條의 2).

10. 電力保安 通信設備 關係

이것은 添加通信線에 使用하는 通信用 「케이블」에
對한 規格이 從來에는 設備基準이 特別히 明示된 바 없
었던 것이나 이번에 이것을 明確히 해 둔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電力保安 通信設備 關係>

(1) 添加通信線에 使用하는 通信用 「케이블」의 規格
을 定立했다(省令 第165條~第167條, 第170條, 第170
條의 2, 告示 第26條의 2).

11. 電氣使用場所의 施設

이 事項은 放電燈回路에 對한, 主로 商品照明用에
需要되는 「라이팅 닉트」를 使用할 때의 施設方法과 아
울러 工事方法乃至 그 種類等을 具體的으로 規定한 것
이니 그 明示한 改正內容은 다음과 같다.

<電氣使用場所의 施設>

(1) 放電燈回路에는 主로 商品照明에 쓰이는 「라이
팅 닉트」를 使用하는 경우의 施設方法을 規定함과 同時
에 工事方法의 種類에 「라이팅 닉트」工事を 添加規定
했다(省令 第11條, 第161條, 第178條, 第189條, 第200
條, 第203條, 第204條, 告示 第32條의 2).

(2) MI 케이블의 굵기의 表示方法을 BS規格에 포함
해서 直徑表示에서 斷面表示로 改正했다(省令 第179條,
第186條).

(3) 機械器具의 端子部分에서 接續不良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電線과 機械器具端子와의 接續에 관한 規定
을 追加했다(省令 第181條, 第182條, 第185條).

(4) 自動迴轉 遠隔操作의 普及에 依한 電動機의 過
負荷保護는 電流計의 監視로서는 不可能하기 때문에
총래 4KW 以下로 認定하였던 過負荷保護裝置에 對한
省略規定을 削除했다(省令 第184條).

(5) 輕量鐵骨構造등 標準「스판」이 6m로 되어 있고,
施設上의 不安도 없으므로 300V를 넘는 硬子引致工事
와 高壓接觸電線의 支持點間 距離를 從來 5m에서 6m로

改正하는 同時に 電線에 잘 올리지 않는 導體를 使用
할 경우 支持點間 距離를 從來 3m에서 6m로 改正했다
(省令 第190條, 第214條, 第217條).

(6) 日本工業規格「屋内配線用 合成樹脂線纜」가 制定
되어, 線纜의 부피(層)가 1.2mm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從來의 2mm 以上인 것을 1.2mm로 고쳤다(省令 第1
92條, 告示 第29條의 2).

(7) 金屬線纜工事에서는 線纜內에서는 電線에 接續
點을 設立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電氣用 團束法의
改正에 따라 第2種 金屬製線이 制定되었기 때문에 電
線을 分岐可能하도록 改正했다(省令 第195條).

(8) 金屬「닉트」에서의 電線引出 配線工事는 從來 金
屬管工事, 可撓電線管工事로 局限하고 있었으나 여기
다가 合成樹脂管工事, 케이블工事を 追加規定함과 아
울러 金屬「닉트」의 防銷方法으로써 「에나멜」塗裝以外
의 方法도 認定했다(省令 第197條).

(9) 金屬「닉트」, 「바스닉트」를 造營材에 몬일때의
「닉트」의 支持點間 距離는 從來 3m 以下였으나 取扱
者以外에는 出入り 禁止된 場所에 있어 垂直으로 架
設하는 경우에만 6m 以下로 한 수 있도록 했다(省令
第197條, 第198條).

(10) 케이블 工事에서 「케이블」을 造營材에 架設할
경우 支持點間 距離를 從來 2m 以下로 했던 것이나 사
람이 接觸할 極려가 없는 場所에서 垂直으로 架設할
경우 6m 以下로 해도 無妨하다고 規定했다(省令 第
201條).

(11) 「케이블」工事에 있어 「케이블」을 造營材에 架
設하는 경우의 支持點間 距離를 從來에 2m 以下인 것을
사람이 接觸할 極려가 없는 場所에서 垂直으로 架設할
때에는 6m 以下로 해도 無妨하도록 했다(省令 第201
條).

(12) 低壓屋内配線에 使用하는 「케이블」을 「크리
트」에 直接埋設하는 工事方法이 開發되었으므로 이것
을 새로 規定했다(省令 第201條).

(13) 「트로리 바스 닉트」의 施設에 있어서 自動走行部
分에서 手動走行이 옮기는 部分 또는 「트로리」의 替替
部分에서는 「닉트」의 終端部를 閉塞하기 困難하므로
閉塞하지 아니하여도 無妨하도록 했다(省令 第214條).

(14) 石油類, 食品等의 輸送管, 送配水管 등의凍結
防止, 加溫을 目的으로 하는 電氣加熱裝置의 施設例가
많아졌으므로 이것을 新設 規定했다(省令 第13條, 第41
條, 第216條, 第231條, 第243條의 2, 告示 第38條
의 2).